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4. 13 선고 2022가단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24. 접수 제61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차전290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1. “C는 원고에게 7,106,180원 및 그 중 703,915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6%의, 5,921,575원에 대하여는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이는 2019. 10. 22. 확정되었다.

나. C는 2019. 1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24. 접수 제617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인바,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판사 이아영